

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

[강원대학교병원 병동 및 PICU 유리칸막이 설치 공사]

- 건축 -

강원대학교병원

I. 일반사항

- 1) 공사명 : 강원대학교병원 병동 및 PICU 유리칸막이 설치 공사
- 2) 공사위치 :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본관 지상4층~6층 및 어린이병원 지상3층
- 3) 공사개요
 - 가) 공사규모
 - 층 수 : 본관 지상4~6층 내부 및 어린이병원 지상3층
 - 구조체 : 철근콘크리트조 (내부 : 경량 스터드 구조)
 - 공사범위 : 42, 51, 52, 62병동 및 PICU 내부
 - 나) 공사내용
 1. 건축
 - ① PICU : 보양공사, 샤시 및 유리공사, 경량벽체 설치, 도장공사
 - ② 42병동 유리칸막이 공사 : 보양공사, 샤시 및 유리공사
 - ③ 51병동 유리칸막이 공사 : 보양공사, 샤시 및 유리공사
 - ④ 52병동 유리칸막이 공사 : 보양공사, 철거공사, 샤시 및 유리공사, 도장공사
 - ⑤ 62병동 유리칸막이 및 공간조성 공사 : 보양공사, 철거공사, 샤시 및 유리공사, 경량벽체 설치, 도장공사
 - ⑥ 운송 및 소운반 : 운송 및 인력운반
 - ⑦ 폐기물처리 : 철거 폐기물 및 작업 부산물 처리

4) 공사기간 : 착공 후 21일

- 5) 공사면허 : 시설물유지관리업

II. 특기사항

- 1) 본 공사는 강원대학교병원 병동 및 PICU 유리칸막이 설치 공사로서 재사용 집기류 및 기자재를 파악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하고,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재하여 추후 반출 처리한다.
- 2)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하며 현장 시공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, 공사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보안에 대한 사항, 안전관리, 소방관리,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문제점 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진다.
- 4) 공종별 공사착수(예정공정표 제출 및 승인) 및 다음 공정에 임할 시 감독관의 승인 후 진행하고,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(자재승인서 제출 및 승인)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.

- 5)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, 오기 되거나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확인 후 계약자가 시행한다.
- 6) 본 공사 발주당시의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정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주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안전시공은 물론 설계도서상 요구하는 적합한 품질 및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한다.
- 7) 계약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, 본 계약도서에 비하여 동등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한다.
- 8) 계약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,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후 제출하여야 한다.
- 9) 본 공사 시공중 필요시 모든 대 관청 각종 인·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발주청을 대행하여야 하며,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기관의 제반,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를 필하여야 한다.
- 10) 공사 및 시험운전 등에 필요한 부대비 등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자가 부담한다.
- 11) 본 공사에 있어 계약자는 현장에 가설공사(가설칸막이 설치)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건물 및 인명사건 발생시 계약자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12) 본 공사는 천재지변의 경우와 발주관청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정한 자체보상금을 부과한다.
- 13) 본 공사 중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할 경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14) 본 공사중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오류,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.
- 15)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.S 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- 16) 모든 외주 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,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.
- 17) 아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토록 한다.
 - 가) 주요공정검사 : 마감공정상태 등
 - 나) 기성부분검사 : 실제 이루어진 부분으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함.
 - 다) 준 공 검 사 :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.
- 18)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**발주년도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특기시방**에 따른다.
- 19) 본 공사시 계약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(현장 내 먼지 배출 장치 설치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 작업차량과 기타 사항으로 민원발생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한다.
- 20)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공사의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

않도록 한다.

- 21)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(제작도면, 설치요령서, 취급요령서) 등을 작성 제출하고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.
- 22) 현장설명서만 배포하고, 열람용 도면은 현장설명 장소에 비치한다.
- 23) 각 공사 진행 시 주의 사항
 - 가) 현장 여건 및 공정 진행 상황에 의하여 야간작업 시행 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에 주의한다.
 - 나) 당 현장의 특수성(종합병원)을 작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각 공정을 진행한다.
 - 다) 각 공정에 사용한 자재 및 공구는 작업 종료 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분실 및 도난에 주의하고 모든 책임은 계약자 진다.
 - 라) 자재 및 공구의 운반시 현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며 보양(바닥 보양 및 기준 시설물 비닐 보양 설치)을 철저히 한다.

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

< 공사 내용 문의 ☎ 033) 258-9331 >